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 이렇게 변경됩니다





1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은 어떻게 바뀌나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시행 ('21.4.1.)으로
폐기물 수입은 폐기물 취급자만 수입이 가능하며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출입자 자격 변경

구분	기존	변경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지방자치단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
폐기물 수입자격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을 수입 후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폐기물 수입이 가능한가요?





4월 1일부터는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폐기물의 수입·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포괄 허가·신고를 신청하거나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에 폐기물의 수입·수출이 가능합니다.





3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수입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올바로시스템에 전산처리가 의무화 되었으며
입력대상에 따라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현행(~2021.3.31.)		개정 후(2021.4.1.~)	
		입력시기*	입력내용	입력시기*	입력내용
수입	수입자	운반·인계일	폐기물 종류, 양 등	운반·인계일	폐기물 종류,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인수일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등	인수일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인수일, 인계량, 인계일
	처리자 (재활용, 처분자)	인수일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	인수일	인수일자, 인수량, 계량값
		처리일	처리량, 처리일자 등	처리일	처리량, 처리일자
수출	수출자	-	-	운반·인계일	폐기물 종류,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선적완료일 (선박)	선적일, 선박번호, 선사명, 선적량, 선하증권(B/L), 수입국
				하역완료일 (선박)	하역항, 하역일자
				통관완료일 (수입국)	통관량, 통관일자
	운반자	-	-	인수일	수출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인수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작성



4

폐기물을 수입·수출할 경우 수출입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수출입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출입폐기물 관리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올바로시스템 | www.allbaro.or.kr

